

### 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20조(인센티브의 처리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, 마일리지, 적립금 등(이하 "인센티브"라 한다)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해야 하며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 대형할인점,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

### □ 지적사항

사례1>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에 대하여 모두 현금 전환이 가능함에도 당해 연도에 세입 조치를 불이행

### 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회계담당자는 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 1회 세입 조치하거나 행정 용도로 사용할 것